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7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김남근·김남희·김용만

김현정 · 남인순 · 문금주

박민규 • 박범계 • 박선원

박수현 • 박지혜 • 박해철

박홍근 • 박홍배 • 송재봉

안호영 • 양부남 • 위성곤

이광희 • 이수진 • 이정문

이해식 • 이훈기 • 정동영

정진욱 • 차규근 • 한창민

허성무 · 황정아 의원

(29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에만 충실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공정한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회의론

이 심화되고 있음.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막상 그 투자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시점에서는 신기술,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별도 상장하여 주주들에게는 투자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음. 신사업이야말로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성공한 신사업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투자한 모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후 미래성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한 후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렇게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본 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

합병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나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합병이 추진되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재용 회장이 그룹 내 주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그룹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사례가 대표적 사례임. 최근의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도 일반주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두산밥캣이 두산로봇틱스 보다 매출이 180배나 많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반면 두산로봇틱스는 적자 기업인데, 두산

로봇틱스가 두산밥캣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식인수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매각 가격을 받았다면 두산 에너빌러티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이나, 불공정한 합병으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지어 수천 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새로 기업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이사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자본시장이 살아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이 20%를 넘는 성장세에 비해한국의 자본시장은 마이너스와 소규모의 상승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은 미국과 일본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글로벌 기업 외에 투자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일본의 2010년대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value up"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의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 여 안심하고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공적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쉽 코드"도 일본이 먼저 시행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로 벤치마킹한 것이었음.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기업 이사와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하는 것임. 한편, 이러한 독립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기 위해서

는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같이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8조제2항 후단 중 "書面을"을 "書面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로 한다.

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42조의6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를 ", 제542조의7제2항 및 제542조의16제1항에서"로 한다.

제542조의7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

제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2조의16에 따라 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한 주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각각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외이사"를 "경우독립이사"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천한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본문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를 "그의"로 한

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그러한 방식으로 개최되는 총회를 "전자주주총회"라 한다)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36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1항의 방식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1항의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 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이를 이유로 제376조에 정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상장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상장회사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

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65條(總會의 召集) ① ~ ③	第365條(總會의 召集)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
權의 행사) ① (생 략)	權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②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u>書面을</u> 總	
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를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생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
	선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
	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
	<u>다.</u>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생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u><</u> 삭 제>

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 ③ ~ ⑧ (생 략)
-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u>및 제</u>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다.
- ⑩ (생략)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생 략)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u>,</u> 제 <u>542</u>
조의7제2항 및 제542조의16제1
<u>항에서</u>
<u>.</u>
⑩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u>있</u>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 <삭 제>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 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542조 의16에 따라 이사 후보를 주주 제안한 주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상장회사는 제382 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배제할 수 없 다. <단서 삭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는</u> 제3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7. (생략)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u> 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의</u> 수가 제1항 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 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

- <u>3분의독립이사(제3</u>
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
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u>독립이사는</u>
② <u>독립이사는</u>
1. ~ 7. (현행과 같음)
③ <u>독립이</u>
사의
독립이사의

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의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

4
독립이사
독립이사
<u> </u>
<u>독립이사가</u>
⑤
독립
이사를독
<u> 립이사</u>
<u>н і і</u>
거ㅇ 도리시기
<u>경우 독립이사</u>
츠ᅱ치 도리시기
<u> 추천한 독립이사</u>

시켜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 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 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
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 하여야 <단서 삭제>
<u>91 1</u> . <u>XE 1/11/2</u>
③
감사위원회위원은
•
4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 략) <u><신 설></u>

<u>그의</u>	

(5) ~ (8)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그러한 방식으
로 개최되는 총회를 "전자주주
총회"라 한다) 주주총회를 개
최할 수 있다. 다만, 제36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 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 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1 항의 방식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는 제1항의 방식으로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 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 에 출석할 수 있다.
- 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363 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 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신 설>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 의사 진행등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이를 이유로 제376조에 정한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⑥ 상장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

<신 설>

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 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있다.

③ 상장회사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

<u>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u> <u>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 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